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심야시간대 전용충전구역 주차허용〉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56호)

〈주민·주민단체 충전시설 설치비용 보조〉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04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심야시간대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허용	4
2. 주민 및 주민단체 대상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보조금	7

I . 제 안 경 위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안】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16.
3. 회 부 일 : 2025. 6. 17.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29.
3. 회 부 일 : 2025.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나 전기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그런데 지역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차시설은 부족한 반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적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에 충전구역이 비어 있음에도 주차하지 못하여 일반자동차 사용자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충전시설 설치수량,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는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차갈등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 2제7항 단서 신설).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시행 중에 있음(2022. 1. 28. 시행).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국가 전역에 넓고 촘촘하게 설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뿐만 아니라 주민단체에 대해서도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심야시간대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허용

(문진석의원안 제11조의2제7항 후단 신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심야시간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⑥ (생략)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⑦ ----- ----- ----- ----- ----- . 다만,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주차할 수 있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⑧ ~ ⑫ (생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충전기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함) 외에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으며¹⁾, 이에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²⁾.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가구당 주차공간은 1.05대³⁾이나 세대당 차량보유 대수는 2015년 0.90대에서 2024년 1.08대로 증가하는 등⁴⁾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주차부족 상황에서 심야시간 대 비어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을 일반자동차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할 경우 심야시간 대 일반자동차의 주차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2024년 기준으로 전기자동차는 68만 4,244대가 등록되어 있는 한편⁵⁾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39만 4,132기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으로⁶⁾, 전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K-apt 입주단지 기준.

4) 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

5)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6)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기자동차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1.7대가 보급되어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은 전기자동차등에게 있어 주차는 물론 충전수단이 되는 공간이라고 할 것인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를 주차하도록 허용할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이용과 보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단지 내에서 전기자동차등 등록대수에 비해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면수가 많은 경우 관리주체가 전기자동차 등 외에 일반자동차의 주차도 허용하는 “병행주차구역”을 설정·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⁷⁾,

현행 제도 상으로도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한 경우 심야시간 대 일반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가 허용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구역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2. 주민 및 주민단체 대상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보조금

(이학영의원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생략)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u>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③ 제1항 및 제2항에</u> ----- ----- -----.
⑧ ~ ⑫ (생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 뿐 아니라 주민 또는 주민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임.

2017년 2만 5,108대에 불과하던 전기자동차가 2025년 상반기에는 77만 4,848대로 증가하는 등 누적등록대수가 7년 반 사이에 30.9배나 증가하고 있고,

2025년 상반기 중 휘발유 자동차가 26만 7,132대 신규등록되는 동안 전기자동차는 9만 634대가 신규등록되어 휘발유차 대비 중 33.9%에 달하는 등 과거에 비해 높은 신규등록률을 보이고 있음.

<표 1> 전기자동차 누적등록대수 ('17~'24년)

(단위 : 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전기차	25,108	55,756	89,918	134,962	231,443	389,855	543,900	684,244	774,878

*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와 같은 전기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대수는 2020년 6만 4,188대에서 2024년 10만 9,377대로 4년간 1.7배 수준 증가한 상황으로, 충전기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표 2> 전기자동차 충전기 연도별 보급대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8월	총계(누적)
합계	64,188	42,513	98,504	100,104	109,377	53,636	468,322
급속 (40kW ↑)	9,805	5,262	5,670	13,649	12,697	5,850	52,933
완속 (40kW ↓)	54,383	37,251	92,834	86,455	96,680	47,786	415,389

※ 출처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개정안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을 주민 또는 주민단체로 확대하는 경우 금전적 인센티브 부여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⁹⁾,

- 9)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

이에 따라 제정된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¹⁰⁾ 등 관련 고시에서 환경부장관이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주민·주민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 사업으로 급속충전기 3,560대, 완속충전기 91,000대 등 설치에 5,60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10)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 2025.2., 환경부.

<표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액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023년	302,500	한국환경공단 민간	○ 급속충전기 - (직접설치) 150백만원 x 200기 - (민간보조) 75백만원 x 1,900기 ○ 완속충전기(민간보조) - (일반) 2백만원 x 60,000기
2024년	436,500	한국환경공단 민간	○ 급속충전기 - (직접설치) 150백만원 x 200기 - (민간보조) 75백만원 x 2,900기 ○ 완속충전기(민간보조) - (일반) 2백만원 x 37,000기 - (스마트제어) 4백만원 x 20,000기
2025년	560,750	한국환경공단 민간	○ 급속충전기 - (직접설치) 150백만원 x 610기 - (민간보조) 75백만원 x 2,950기 ○ 완속충전기(민간보조) - (스마트제어 신규) 3백만원 x 71,000기 - (스마트제어 교체) 1.5백만원 x 20,000기

※ 출처 : 환경부 제출자료

문 의 처

02)6788-5460